

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2026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청렴·윤리 경영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신 주요 반부패 정책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내용 (총 5건)

- ① 국민권익위, 2027년 예산 및 기금안 1,826억 원 편성... "공익신고 장려기금 신설" ('26.9.8.)
- ② 지방체육단체 보조금은 빼돌리고, 대회 수익금은 쌈짓돈 쓰듯..."곳곳에서 줄줄 뺐다"('26.9.10.)
- ③ "청탁금지법 10년의 성과, 청렴·공정한 100년의 미래로"('26.9.14.)
- ④ 신고자 보상금 30억 상한 폐지, 신고로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의 30% 지급 ('26.9.22.)
- ⑤ 국민권익위, 지방정부 협력관 복무 소홀·예산 부당사용 등 다수 적발 ('26.9.29.)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렴정책)

■ 문의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044-200-7614)

국민권익위, 2027년 예산 및 기금안 1,862억 원 편성...“공익신고 장려기금 신설”

- 국민권익위, 국민권익 보호 및 청렴사회 실현을 위한 2027년 예산안 발표
- 인공지능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으로 국민편의 증진
- ‘공익신고 장려기금’을 통한 신고자 보상 강화, 청렴·권익교육 기능 확대
- 범정부 집단갈등조정협의회 개최 등 집단민원·특이민원 대응 강화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의 2027년도 예산 및 기금안이 전년 1,117억 원 대비 745억 원 증액된 1,862억 원으로 편성된다.

특히, 기획예산처가 신설하는 ‘공익신고 장려기금’에 기존 신고자 보상금 등 예산이 이관되어 402억 원 증액된 451억 원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주권정부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을 뒷받침할 2027년도 예산 및 기금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 3대 추진전략 : 1.선제적·현장 중심 대응으로 국민 고충 해소, 2.국민 목소리에 기반한 제도개선 및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3.반부패 법·제도 정비 및 청렴문화 확산

□ 이번 예산편성을 통해 2027년도에 추진될 예정인 국민권익위의 핵심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정확히 듣고 더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국민권익플랫폼 구축사업 1단계에 착수한다.

1단계 사업에서는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민원을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분석·분류하고, 과거의 유사 해결 사례 등을 바탕으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제안하여 국민에게는 신속하게 해결책을 제공하는 ‘지능형 국민 소통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 인공지능 기반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등 :

(2026년) 4억 5천만 원 → (2027년) 147억 3천만 원(+142억 8천만 원)

- 둘째, 정부 상담번호가 너무 많아 발생하는 국민 불편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110을 중심으로 비긴급 상담번호를 통합·연계한다.

2026년도에 15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를 비롯해 일반상담콜센터 6개를 110으로 통합 시범 운영한 데 이어, 2027년에는 추가로 13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와 일반상담콜센터 17개를 통합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AI)기반 범정부 전화상담 허브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한다. 110 통합상담 플랫폼 및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고 인공지능 상담지원 기능을 시범 적용하며 110과 전문상담콜센터 간 원스톱 연계모델을 개발하여 시범 운영한다.

※ 비긴급 상담번호 110 시스템 통합 및 통합 콜센터 운영 등 :

(2026년) 150억 1천만 원 → (2027년) 257억 1천만원(+107억 원)

- 셋째, 부패·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2026년 하반기에 부패신고나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 상한 폐지 등 보상체계의 개선이 추진되며, 이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관련 예산을 기획예산처가 신설하는 ‘공익신고 장려기금’으로 이관 및 증액 편성한다.

이를 통해 보상체계 개선에 따른 추가적인 소요 재원이 충분히 마련됨으로써 신고자가 공익적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적시에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부패·공익신고자 등 보상금·포상금·구조금 :

(2026년) 49억 원 → (2027년) 451억 원(+402억 원, 기금 이관)

- 넷째,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초래하는 집단민원과 특이민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집단·특이민원을 현장과 조정·경청 중심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사활동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범정부 집단갈등조정협의회 및 갈등조정담당관 워크숍 등 개최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지방정부-공공기관 간 협력사항과 우수 성과를 공유하여 민원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는 공직 문화를 확산한다.

또한, 민간전문가를 시민상담관으로 위촉해 공직자의 특이민원 대응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이와 별개로 ‘특이민원 전문대응관’을 운영해 특이민원인과의 1:1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경청과 소통을 통한 특이민원 감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집단·특이민원 범부처 협업 및 적극 해소 등 :

(2026년) 2억 3천만 원 → (2027년) 69억 9천만 원(+67억 6천만 원)

□ 다섯째,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의 청렴·권익교육 기능을 강화한다.

초·중·고 학생 대상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일선 현장의 자율적 교육 활성화를 위해 미래세대 대상 교육과정 개발·보급에 나선다.

아울러, 노후화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신 교육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현대화된 교육시설을 증축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비해 다소 낮은 청렴·권익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청렴문화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기능 강화 및 청렴·권익교육 확대 등 :

(2026년) 29억 7천만 원 → (2027년) 31억 8천만 원(+2억 1천만 원)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민께서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청렴의 가치가 더욱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2027년도 예산 및 기금안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지방체육단체 보조금은 빼돌리고, 대회 수익금은 쌈짓돈 쓰듯 “곳곳에서 줄줄 샀다”

- 국민권익위, 12개 기초지방정부 대상 지방 체육분야 보조사업 실태조사 실시
- 지방정부 보조금 받아 개최된 체육대회 수익금 누락 및 전반적인 관리부실 확인
- 부당 지급된 보조금 환수 및 관계부처에 관리체계 정비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 중 보조금 정산 및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12개 지방정부*를 선정하고, 최근 3년(2022년~2024년) 동안 해당 지방정부가 추진한 체육분야 보조사업의 보조금 편성·교부·집행·정산·후속관리 등 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원주시, 통영시, 전주시, 순창군, 진천군, 화성시, 진도군, 목포시, 구미시, 포항시, 양산시, 천안시

□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체육회 및 종목별 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추진한 지방 체육분야 보조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최근 3년(2022년~2024년)간 226개 기초지방정부가 추진한 체육분야 보조사업의 수는 31,578개이며, 교부된 보조금은 약 1조 5,313억 원

□ 체육행사 등 개최를 위한 보조금은 지방체육회 등 보조사업자가 행사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고,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을 신청하는 보조사업자는 해당 사업으로 수입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신청시 예상 수익금을 사업계획서 등에 반영해야 한다.

*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조 제1항 제8호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2024년 동안 지방체육단체가 각종 대회를 개최하면서 선수들로부터 받은 참가비 등의 대회 수익금*을 보조금 신청 단계부터 마지막 정산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발생 사실을 누락하는 등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수익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보조사업에 투입된 보조금 규모는 최소 2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 수익금: 대회 참가비, 입장료, 협찬 및 후원금

이번 실태조사 시, 대다수의 체육회가 보조사업을 통한 수익금의 수입·지출내역과 증빙 등을 제출하지 않아 일부 제출된 수익금 집행 내역만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고, 이번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정산 누락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 대회 필요경비를 3억 원이라 가정할 경우 보조금 교부 예시



□ 7연맹의 경우 비슷한 대회를 여러 기초지방정부에서 각각 개최하면서 대회 수익금 전액을 우수선수 해외 파견비용에 사용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항공료는 실제로 학부모가 부담했으며, 7연맹은 다수의 기초지방정부에 동일한 자료를 수익금 사용 증빙으로 중복

제출하여 약 1억 4천만 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

ㄴ체육회는 대회 참가비로 발생한 수익금 약 5,800만 원 중 약 4,800만 원을 임의로 집행했고, 그 중 약 1,800만 원은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협회 지도자 부의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교부받은 보조금을 고의적으로 편취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A기초지방정부의 체육분야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은 2023년 보조사업비 부족으로 용역업체에 대한 정상적인 대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2024년 실제 용역이 없었음에도 가짜 임차용역 계획서를 첨부한 공문서를 작성하여 A기초지방정부 일반회계 예산 약 2,000만 원 가량을 허위로 집행했고, 허위 집행으로도 대금 지급이 어려워져 부족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보조사업비를 부풀려 청구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ㄷ협회 사무국장은 본인이 보조사업에 사용할 물품에 대한 발주와 납품, 검수까지 모두 혼자 수행하면서 배우자.모친.장인 등 가족 또는 친구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보조사업에 사용할 용품 등을 허위로 발주하는 방법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62회에 걸쳐 약 4억 원을 편취했다.

* 이번 실태조사는 2022년~2024년까지의 체육분야 보조사업 실태를 점검한 것이나, 조사과정에서 2025년도까지 지속된 ㄷ협회 사무국장의 편취 행위가 확인됨

그밖에 다른 지역체육단체에서도 대회 관련 물품 등을 체육단체 임원이나 그 가족 업체 등으로부터 비정상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총 96회에 걸쳐 약 2억 8천만 원 상당으로 확인되었다.

□ 이와 더불어, 보조금으로 지급된 체육행사 유치금을 체육단체가 별도의 증빙이나 정산 없이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기초지방정부는 국가대표 평가전 개최를 위해 ㄹ협회에 3억 원을

지급하는 등 3년간 총 8억 6천만 원의 보조금을 유치금 명목으로 집행했지만, ㄴ협회가 어떻게 유치금을 사용했는지 세부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C기초지방법정은 체육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ㄹ연맹에 대회타이틀 협찬 비용으로 매년 8,000만 원씩 3년간 총 2억 4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사후정산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ㄴ체육회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대회 주관 중앙협회 및 연맹에 유치금 명목으로 총 14건, 총액 약 6억 2천만 원을 집행했는데, 유치금 세부 집행내역, 증빙자료 등을 위원회 조사 시 제출하지 못하는 등 유치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보조금이 체육회, 단체종목 협회 임원 등에게 선심성 수당으로 쓰이고 있다는 정황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ㄸ체육회는 법령의 근거 없이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인건비 약 3,400만 원을 체육회 회장 등에게 수당 명목으로 부당하게 지급했다.

ㅇ체육회는 종목단체 운영지원 명목으로 총 53개 단체 사무국장에게 매월 16만 5,000원 씩 매년 약 1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법령·조례상 근거 없는 수당으로 부당하게 지급했다.

- 이 외에도 계약 쪼개기, 식사비 허위·과다 청구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승인 없이 보조금을 불법으로 재교부하거나, 의무사항인 감사보고서 등의 작성 및 보고를 이행하지 않는 등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도 확인됐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기초지방법정부에 통보하여 환수 등 시정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일부 횡령·배임 등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항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보조사업의 수익금 관리 등 구체적 규정의 미흡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지역 체육의 저변 확대와 진흥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지방체육 보조사업의 수익금 규모를 투명하게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한 규모의 보조금을 교부하고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공공재정이 투입되어 진행되는 사업의 각종 보조금이 올바른 곳에 쓰이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10년의 성과, 청렴·공정한 100년의 미래로”

-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계기 토론회 개최…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와 10년의 성과 회고 및 제도 발전 방안 모색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10년의 성과를 국민과 함께 되돌아보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청탁금지법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개선 과제를 전문가 및 각계 관계자들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청탁금지법은 시행 이후 우리 사회의 청렴에 대한 인식과 공직사회의 관행에 변화를 불러오며 안정적으로 정착해 왔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가 2018년 4,386건에서 2025년 1,280건으로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공고히 뿌리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현실화 요구 등을 반영해 음식물 및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을 조정하는 등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춰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10년의 성과와 과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규정의 개선방안,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과

태료 부과권자 및 부과범위 조정 필요성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며, 국민권익위는 공식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과 KTV의 유튜브 채널 ‘KTV국민방송’을 통해 토론회를 생중계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지난 10년 간 우리 사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고 공정한 사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왔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토론회가 지난 10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청렴정책과 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신고자 보상금 30억 상한 폐지, 신고로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의 30% 지급

- 국민권익위 소관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공공재정 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오늘(22일) 국무회의 의결…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
- 앞으로는 기존의 상한액(30억 원) 제한 없이 신고로 인한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증대·비용절감 금액의 30%를 신고자 보상금으로 지급

□ 앞으로 부패·공익침해행위 등을 신고하여 공공기관의 재정 회복에 기여한 신고자에 대한 보상이 강화될 예정이다.

신고자는 보상대상가액*의 30%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30억 원으로 제한됐던 지급상한도 폐지된다.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공재정 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신고자 보상은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보상금 기준을 준용하고 있어 이번 개정으로 국민권익위 소관 반부패 5개 법률의 보상금 지급체계가 함께 개선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두 가지다.

먼저, 보상금 산정기준의 개선이다. 기존의 신고자 보상금은 보상대

상가액에 따라 4~30%의 비율로 차등 산정되어 보상대상가액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지급비율이 적용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보상대상가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30%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한다. 다만 신고 내용의 정확성,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현행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신고자가 부패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 둘째, 30억 원으로 제한됐던 보상금 지급상한이 전면 폐지된다.

기존의 신고자 보상체계에서는 공익신고의 경우 신고자 보상금의 지급 상한이 없었으나, 그 외 부패신고,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 등의 경우에는 보상금이 아무리 크게 산정되더라도 최대 30억 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신고자 보상금에 대한 지급상한을 폐지함에 따라 고액의 재정 회복에 기여한 신고자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보상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의 경우에도 신고자 보상금 지급 상한은 최대 30억 원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급 상한이 함께 폐지됨

□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은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보상금 지급기준은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한 신고는 부패를 적발하고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시행

령 개정이 신고자의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이어져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지방정부 협력관 복무 소홀 ·예산 부당사용 등 다수 적발

- 국민권익위, 지방정부가 국회·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운영하는 협력사무소 110곳 실태조사…68곳에서 총 2억 7천만 원 부당 집행 확인
- 실제 근무 없이 시간외근무수당 수령, 출장 증빙 없이 출장여비 정액 지출 등 복무·예산관리 사각지대 확인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과의 정책·예산 협의 등을 위해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협력사무소의 예산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68곳에서 총 2억 7천여만 원의 부적정한 예산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협력사무소를 운영하는 110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5년도 예산집행 내역 중 ▲시간외근무수당, ▲출장여비, ▲공무용 차량 관련, ▲주택보조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조사 결과, 68개 협력사무소 125명이 총 2억 7,310만 원 상당의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거나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고, 별도 사무공간에서 혼자 근무하며 외부활동이 많은 협력관의 특성상 복무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항목별 위반사항]

(단위: 곳, 명, 천 원)

점검항목	기관수	인원	금액	비 고
합계	68	125	273,100	
시간외근무수당	28	37	122,957	음주, 식사 후 허위 근무내역 등록 등
출장여비	15	19	10,119	증빙없이 정액 수령, 출퇴근도 출장 처리
공무용차량	8	9	5,509	골프장 방문, 일상적 출퇴근 시 사용 등
주거지원비	8	10	79,200	근무지와 동일 생활권 거주자 지급
사무관리비	32	33	27,681	축하 화분 구매, 관사 관리비 지출 등
업무추진비	16	17	27,634	사적 사용, 쪼개기 결제, 허위 기재 등

- 먼저, 시간외 근무수당의 경우 실제 시간외근무를 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퇴근시간을 입력하거나 수기대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28곳, 37명, 총 1억 2,295만원)

■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주요 사례

ㄱ시 등 24개 지방정부 협력관은 저녁 식사 또는 음주 후 늦게 사무실로 복귀해 퇴근시간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챙겼으며, ㄴ시 등 4개 지방정부는 별도 사무실 없이 관사에서 근무하는 점을 악용해 매월 상한선(57시간)까지 수기대장을 작성하여 수당을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3,047만 원을 부당 수령

- 출장여비의 경우 출장에 대한 증빙자료 없이 출장비를 매월 정액으로 받거나, 일상적인 자택 출퇴근을 출장으로 처리하는 등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15곳, 19명, 총 1,011만 원)

■ 출장여비 관련 주요 사례

ㄷ시 협력관은 증빙 제출 없이 매월 60만 원씩 1년 총 724만 원의 출장비를 수령했고, ㄹ군 등 4개 지방정부 협력관은 자택 출퇴근을 출장으로 처리해 여비를 받았으며, ㄴ시·ㄴ시 협력관은 출장 중 업무추진비 및 공용차량을 사용하고도 여비를 삭감하지 않음

- 공무용 차량과 관련해서는 자택 출퇴근, 주말 이동, 골프장 방문 등 사적 용도로 공무용 차량을 운행하고 관리대장 작성을 소홀히 한 사례가 적발됐다. (8곳, 9명, 총 550만 원, 91회 32,458km)

■ 공무용 차량 관련 주요 사례

ㅅ군 협력관은 근무시간 중 서울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강원 춘천 및 인천 강화 소재 골프장을 방문(12회)하는 데 공무용 차량을 무단 사용했고, ㅇ시 및 ㅈ군 협력관은 주말 자택 출퇴근 시 공무용 차량을 사실상 개인 차량처럼 상시 이용

- 주택보조비의 경우 명시적 지급 근거 없이 임기제·기간제 협력관에게 주택보조비를 지급하고(8곳, 10명, 총 7,920만 원), 특히 근무지와 동일 생활권에서 이미 거주하고 있는 협력관에게 주택보조비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 주택보조비 관련 주요 사례

ㅊ도 등 3개 지방정부는 채용 당시 이미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던 현지 임기제 협력관에게 명시적 근거 없이 개인 숙소 임차료를 지급하여 총 4,200만 원을 부당하게 지출

- 사무관리비 부당 집행 사례는 다음과 같다. 실제 관사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협력관이 부담해야 할 관사 관리비를 예산으로 지출하거나 축하 화분 구매비를 사무실 환경정비 등 예산으로 허위집행하는 등 사무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례도 확인됐다. (32곳, 33명, 총 2,768만 원)

■ 사무관리비 관련 주요 사례

주시 등 6개 지방정부는 관사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아파트 관리비 및 소모품 비용 911만 원을 예산으로 지출했으며, 시군 협력관은 국회·중앙부처 공직자에게 축하 화분을 보내고 사무실 환경정화용 식물을 구입한 것처럼 꾸며 예산을 집행

- 업무추진비의 경우 사적 사용, 쪼개기 결제, 심야·주말 결제 등 예산 집행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드러났다. (16곳, 17명, 총 2,763만 원)

■ 업무추진비 관련 주요 사례

시군 협력관은 금요일마다 근무시간 중 서울 근무지를 벗어나 대전 소재 식당으로 이동해 지인과 식사하며 업무추진비를 지출(6회, 125만 원)했고, 시에서는 50만 원 이상 결제 승인을 피하기 위해 동일 식당 쪼개기 결제(8회, 321만 원) 및 23시 이후 심야 결제 진행

-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행정안전부와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하여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에 대한 환수 및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본청과 분리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복무·예산관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에 협력관 복무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통보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협력이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나 원격지 근무라는 허점을 악용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부적정한 관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지방정부가 협력사무소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